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5가단40039 판결 [이득상환금]

전 문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변론 종결 2016. 12. 8.

판결 선고 2017. 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6,5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1)(이하 'C'라고만 한다)는 1998. 4. 1. ①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1998. 4. 3.,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시, 수취인 D와 원고로 하는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후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인낙의 의사표시가 담긴공증인가 동방종합법무법인 작성 증서 1998년 제325호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②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1998. 4. 6.,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시, 수취인 D와 원고로 하는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후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인낙의 의사표시가 담긴 공증인가 동방종합법무법인 작성 증서 1998년 제326호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주었으며, ③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1998. 4. 6.,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시, 수취인 D와 원고로 하는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후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인낙의 의사표시가 담긴 공증인가 동방종합법무법인 작성 증서 1998년 제327호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주었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공정증서'라 한다).

나. 한편 C는 1998. 2.경 파산하였는데, C의 임차인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0가합2870호로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C가 채무를 면탈할목적으로 기업의 형태 ·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주식회사 E'에서 2000. 11. 1. '주식회사 F'로, 2006. 12. 27. 현재 상호로 순차 상호가 변경되었다)를 설립하여 두 회사의 법인격이 동일함을 전제로, 2001. 8. 23. 위 임차인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2. 10. 23. 서울고등법원 2001나55903호로 항소기각판결이, 2004. 11. 12. 대법원 2002다66892호로 상고기각 판결이 각 선고되어 2004.11. 12.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D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공정증서와 발행인 C, 발행일 1998. 2. 23., 액면금 9억 원, 지급기일 1998. 4. 15., 지급지 및 발행지 각 서울시, 수취인 D와 원고로 된 약속어음 1매2)를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차7969호로 합계16억 원의 어음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5. 4. '피고는 원고 및 D에게 16억 원및 이에 대하여 1998. 4. 22.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5. 6. 17.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6. 3. 피고에게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내고(같은 달5. 도달하였다), 2015. 1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G박물관 내부 도장공사'를 46,856,750원으로 하도급받아 기성분 공사대금이 10,000,000원이 발생하도록 시공하는 등 C에 대하여 26,566,000원3)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공정증서 등에 기초하여 C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격을 가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아두었던바, 확정된 지급명령금 16억 원 중 원고의 채권액 상당의 지급을 이 사건 소로써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확정된 지급명령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신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참조),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다투고 있어 청구이익의 소가 제기될 것이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아래와 같이 그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되고, 그 시효연장의 기간 도과가 임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정된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민사소송법 제474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62841, 62858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05. 6. 17.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직전인 2015. 6.3. 피고에게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내 그 최고서가 같은 달 5. 도달한 사실, 원고가 그로부터 6월내인 2015. 1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원고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도 있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약속어음채권은 원인관계의 부존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무인성을 가지고 있으나, 어음행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약속어음채무자가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또는 C에 대하여 어떠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공정증서와 액면금 9억 원인 약속어음은 모두 C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인채권 없이 발행된 허위의 어음이므로, 위 어음상 권리를 이유로 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다두고 있으므로, 과연 원고가 주장하는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법인은 어디까지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어서 법인을 그 대표자인 개인과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갑 제10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C는 1997. 11. 30. 주식회사 J(2012. 8. 30. '주식회사 K'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J'이라 한다)에 G박물관 내부 도장공사를 공사대금 46,856,75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등 1994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J과 거래한 사실, ② 원고는 1995. 6. 20.부터 1997. 4. 27.까지, 2001. 3. 25.부터 2002. 1. 15.까지, 2010. 6. 28.부터 2012. 8. 30.까지 각 J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고, 대표이사가 아닌 기간에도 이사 또는 사내이사직을 유지하였으며 현재 J의 사내이사인 사실, ③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이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0금3015호로 공탁한 변제공탁금(215,122,172원)에 관한 배당절차(서울서부지방법원 L)에서 2005. 6. 20. J이 독립된 채권자(가압류권자)로서 41,219,040원을 배당받기도 한 사실, 4 한편 원고는 J의 이사 자격으로 D와 함께 C의 파산에 즈음하여 C에 대한 약 94개업체의 채권단 대표라 칭하며 수취인들을 자신들로 하여

C로부터 이 사건 각 약속어음공정증서와 액면금 9억 원인 약속어음을 받아두고 이를 근거로 각종 보전처분 및 집행을 하고 배당절차에도 참여하였으나, 그 결과 얻게 된 급부를 다른 채권자들에게 단한 차례도 분배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D 개인의 채권 만족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D에 대한 채무(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5,900만 원이고 D의 주장에 의하면 1억 3,000만 원으로, 어느 쪽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약속어음의 액면금 합계액인 16억 원에는 한참 모자라는 금액이다)만의 변제를 조건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무효화한다는 취지로 합의하기도 한 사실, ⑤ 위 3항 기재 배당절차에서도 원고와 D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각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가압류권자로 22,087,438원을, 액면금 9억 원인 약속어음에 기하여 가압류권자로 28,398,135원을 각배당받았는데, 위 각 배당금을 원고와 D가 내부적으로 분배하지 아니하고 모두 D가 취득한 사실(D는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양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이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각자의 채권 만족을 위해 공동으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된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등을 인정할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법인인 J이 C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볼수 있을지언정(앞서 본 배당절차에서 J이 배당받은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이마저도 변제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도저히 원고 개인이 C에 대하여 어떠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약속어음공정증서와 액면금 9억 원인 약속어음의 각 원인채권은 부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법원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의 원인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보람

1) 박물관, 과학관,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사업, 산업프랜트, 동작, 건축, 기타 각종 모형전시물, 제조설치사업, 의장공사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약속어음의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수차례에 걸친 석명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사본만 제출하고 위 액면금 9억 원인 약속어음의 사본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15호증 등 제출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액면금 9억 원인 약속어음이 발행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발행인이 C로 된 1) 발행일 1997. 11. 15., 액면금 4,785,000원, 지급기일 1998. 3. 20.,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수취인 공란인 약속어음(H)과 2 발행일 1998. 2. 9., 액면금 11,781,000원, 지급기일 1998. 7. 9.,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수취인 공란인 약속어음(1)을 각 소지하고 있다면서 그 사본을 갑 제3호증으로 제출하였는데, 위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 합계액이 16,566,000원이다.